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4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김주영・박홍배・박상혁

정태호 · 서영교 · 이용우

이수진 • 이학영 • 윤종군

김태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무려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미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

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 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 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 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관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지급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 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 0조제4항 신설).
- 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102조).
- 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안 제103 조의2 신설).

아.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 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 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 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등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나 낙찰자 심사 · 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④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 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횟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제3항 후단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5(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금등의 체불 기간 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2.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 4. 사업주의 재산상태
- 5.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③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가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록 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2조제1항 중 "건물"을 "건물(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제출 장부와 서류의 검토, 심문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등의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3조의2(근로감독관의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직위에 배치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6조,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 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 <u>다음 각 호</u>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 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 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는 날의 다음 날-----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 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 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 제2조제5호에 따 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4일이 되는 날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 저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 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 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
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
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
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세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세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u>수당,</u>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

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u>여부</u> 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u>이하 이 조에서</u>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3)
③
<u> </u>
<u>여부</u>
<u>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u>
<u>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u>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u>여부</u>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이하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④ (생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25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 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 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 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3	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u>원</u>
<u>으로 본다.</u>	
<u>⑤</u>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	해
<u>당하는</u>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u>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 ② ③ (현행과 같음)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수 있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

상 체불한 사업주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 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 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 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 가등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 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④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 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 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
 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제3항 후단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신 설>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 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 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경우
-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금등의 체불 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2.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노력한 정도
-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 급액
-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 제 른 임금채권은 <u>3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생 제략)

<신 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 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 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5.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③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
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9조(임금의 시효)
<u>5년간</u>
]50조(근로시간)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개
시 · 종료시간을 일 · 주 · 월 단
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
며, 그 기록 내역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
<u>건물(이하 이 조</u>
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제

출 장부와 서류의 검토, 심문

<신 설>

제109조(벌칙) ① <u>제36조</u>, 제43조, 저 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 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 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 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 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사업장등의 사용자에
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네103조의2(근로감독관의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
관의 직위에 배치된 인력의 전
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세109조(벌칙) ① <u>제36조, 제37조</u> ,
·.
2

소를 제기할 수 없다. <u><단서</u> <u>신설></u>